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초격차·신산업 관련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①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넥스트 유니콘 기업 육성

② 모집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대표 연령 무관)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요건]

①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 (초격차)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신산업) 빅데이터·AI, 블록체인, 의료기기, 신재생 등
☞ 상세내용 : [참고 6](#)

②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3 모집규모 : 60명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국내·외 특화프로그램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 공간 제공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내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8석까지 제공 가능
- * 별도의 구획이 구분되지 않은 개방형 공간으로, 분리공간 지원 불가

4 지원내용 (상세 내용 ↗ 4~5p)

- 글로벌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

【 글로벌 5G 프로그램(안) 】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써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역량 진단 기반 특화멘토링 사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아워 ▪ S-CoP ▪ 컨퍼런스 진출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전략 ▪ 제품 현지화 ▪ 파트너 매칭 현지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VC-AC 초청 IR 행사 - 국내·외/배치별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력 정책연계
사업화 지원금 + 창업 공간·인프라 + 후속 성과관리				

5 지원기간 : 1년 이내

2.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14(수) 14:00까지

2 세부일정

① 신청 및 접수 1.15(월) ~ 2.14(수)	➡	② 자격 검토 2.15(목) ~ 19(월)	➡	③ 서류심사 2.21(수) ~ 23(금)
⑥ 최종결과 발표(예정) 3.25(월)	⬅	⑤ 발표 심사 3.13(수) ~ 14(목)	⬅	④ 서류심사 결과발표 2.28(수)
⑦ 협약 체결 3.26(화) ~ 4.1(월)	➡	⑧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4.2(화) ~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필요에 따라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음)
- ※ 발표심사 및 오리엔테이션은 대면이 원칙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중진공)하며, 입교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입교 취소 예정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심사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일정 등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start.kosmes.or.kr>)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공지 예정
- 세부일정은 신청, 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 발표심사를 위한 영문 발표 자료는 이메일 제출(제출처 별도 안내)

3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4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서류	· 2024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2
증빙 서류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창업자(창업 7년 이내) : ①창업기업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명원, ③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④주주명부(법인) -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붙임3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함)
	· 발표평가 가점사항 증빙자료 1부(해당 시)	
주의 사항	· 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발표심사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 마감 시간(14시)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 가능(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필수서류, 증빙서류 각각 1개의 파일로 제출

3. 신청자격 (공고일 : 1월 15일 기준)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서, 본 사업이 요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수행(해외방문, 영어소통)이 가능한 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2017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업력 7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 과정으로 운영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5G 프로그램 단계별 패키지 지원

①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인센티브 포함)

* 평균 지원금액 : 1.1억원 내외

○ (지원용도) 제품·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BM(Business Model) 수립, 해외시장조사·검증을 통한 제품수정, 해외 인증 및 IP(Intellectual Property) 취득, 현지 체재비 등

○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 금	현 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 입교자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 2) 활용)

<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가.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입교자 부담금(현금+현물)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나.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 : 정부지원금+입교자 부담금(현금)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금	현물
14,284만원	10,000만원	1,429만원 (정부지원금의 1/7)	2,857만원 (정부지원금의 2/7)
100%	70%	10%	20%

*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인센티브 포함)

2] 글로벌 5G 프로그램

○ **G-멘토링**(사전진단 및 멘토링) : 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 AC 전담 멘토의 1:1 멘토링 실시

* 예 : 해외검증형(준비단계), 해외진출형(진출단계), 해외확장형(확장 및 투자유치 단계)

○ **G-Lab**(진출준비) : 해외 진출 성공률 제고를 위해 실무 중심의 글로벌 오피스 아워, S-Cop*, 컨퍼런스 운영

* 국내·외 스타트업간 업종별, 공통 관심사별 문제해결형 워크숍

○ **G-캠프**(현지진출) : 글로벌 AC를 활용하여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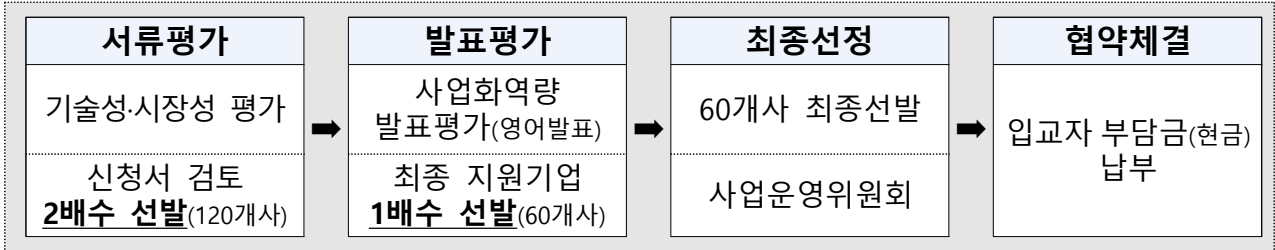
○ **G-라운드**(투자유치) : IR 멘토링, 현지 IR 및 글로벌 AC·VC 초청 데모데이 등 글로벌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G-써포트**(정책연계) : 현지 입주공간, 자금 등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5. 선정 및 지원 절차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선발절차 >



1] 서류심사 (1단계)

- (평가방법)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및 신청자격 검토
- (평가항목) 해외진출 역량, 기업 경쟁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및 글로벌 진출 성과 관련 KPI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 사업계획서 내 '사업화 과제 개요' 영문 요약본(2페이지 이내) 필수 작성
 - * 표절검사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문서 및 콘텐츠 비교 검사)을 통해 신청서 상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 이후에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2] 발표심사 (2단계)

- (평가방법) 신청자(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영어)를 평가위원회 및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창업팀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종합 평가
 - * 가점 : 최대 3점 이내 부여 ([참고 5] 참조)
 - * 최종 합격 (1배수, 60개팀) + 협약 포기기업에 대비한 예비합격 (0.3배수, 18개팀)

3]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초격차·신산업 혁신기술 관련 창업역량 및 글로벌 역량(인력 구성, 인프라 보유 여부) 확인 필요 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방법) 서류 및 발표 평가결과로 최종 지원기업 및 사업비 결정
- (평가항목) 평가 결과의 타당성,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

5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3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6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 가. 사업비의 용도와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6. 유의사항

1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신청)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
-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유의
- ③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④ **사업 신청자는 신청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 처리**
- ⑤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서울신용평가정보(SCI)기업실명 인증, ②기업공동인증서 인증, ③국세청 사업자 확인, ④금융인증서 인증을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시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신청 필요**

◆ (관계법령)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③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 후 사업비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④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
 -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양자 중 택1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 사업수행 중인 자(기업)는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4년 5월 14일)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 사업은 중복 검토대상 사업에서 제외

2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영어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며, 코로나 등 대외 여건에 따라 평가는 온·오프라인으로 유동적 운영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3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원내용 중 일부만 참가할 수는 없으며, 계획서 상 설정한 KPI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협약기간 내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1 신청관련 문의처

구 분	운영기관	연락처	
사업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2-6735-)	1334~1338
K-스타트업 전산오류 관련	창업진흥원	1357(내선3번)	

2 홈페이지

구 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3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위치

-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G-TOWER 10층
- (대중교통)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버 스)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차(마을버스 금천 07)

-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3.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발표평가 가점사항
 6. 초격차·신산업 분야

- 【붙임】**
1. 2024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서
 2.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제출서류
 3.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기창업자 해당, 공고일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창 업		
			이종변경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창 업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이종변경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창 업		
			이종창업	불인정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이종창업	창 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법인전환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이종창업	창 업	
				폐업 3년 초과	불인정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자회사 해당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불인정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참고 2

현물 계상 항목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8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구분	기업, 기관, 단체 등 경력	국공립연구기관	기준보수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자는 10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기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기술사, 기능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30만원/월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자는 7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으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75만원/월
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20만원/월
4호	• 1호, 2호, 3호를 제외한 인원	• 기능직	206만원/월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2024년 5월 14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글로벌창업사관학교 발표평가 가점사항**

연번	세부내용	점수
1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0.5점
2	'20~'23년 글로벌창업사관학교·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	0.5점
3	신청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유치를 받은 자 (투자유치액 5천만원 이상) (단, 투자유치를 받은 회사의 (공동/각자)대표가 입교 신청자여야 한다.)	2.0점
4	해외법인 설립, GBC/KSC 입주기업	2.0점
5	전년도 수출실적 1만 USD 이상	2.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참고 6

초격차 · 신산업 분야

□ **초격차 분야**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22.11.4, 중기부)

분 야	세부품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신산업 분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분 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